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35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이종배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재진,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성연, 서상열, 유만희,
유정인, 이봉준, 이상욱,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2명)

1. 제안이유

- 청년 발전 및 권익증진에 공헌한 청년에게 포상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년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 문제 해결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시민상 수상대상자에 청년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6호 및 안 제3조제3항 신설).
- 나. 서울특별시시민상 시상 종류, 방법 및 시기에 서울특별시청년상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울특별시청년상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청년상의 수상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나목 중 “청년 및 청소년지도분야”를 “청소년지도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울특별시청년상 : 청년의 날(9월 세 번째 토요일)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및청소년상	94	3	19	72
-------------------	----	---	----	----

별표 1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청년상	20	1	3	16
----------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 ① 서울 특별시시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시상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6. ~ 10. (생 략)</p> <p>② (생 략)</p> <p>제3조(수상대상자) ① (생 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의 수상대상자는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2. (생 략)</p> <p>3. <u>청년분야 : 19세 이상 24세 이하</u></p> <p><u><신 설></u></p>	<p>제2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 ①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서울특별시청년상</u></p> <p><u>7. ~ 11. (현행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수상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③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청년상의 수상대상자는 「서울특별시</u></p>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제4조(시상 방법 및 시기) ① 시상은 시상종류별로 연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
가. (생략)
나. 청년 및 청소년지도분야 :
성년의 날(5월 셋째주 월요일)

<신설>

6. ~ 10. (생략)
- ② (생략)

제4조(시상 방법 및 시기)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 (현행과 같음)
나. 청소년지도분야 -----

-

6. 서울특별시청년상 : 청년의 날
(9월 세 번째 토요일)
7. ~ 11. (현행 제6호부터 제10호
까지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시상종류별 시상인원
시상종류별 시상인원

(단위 : 명)

종류별	시상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계	252	13	67	172
서울특별시봉사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문화상	14	-	14	-
서울특별시환경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복지상	16	2	5	9

[별표 1] 시상종류별 시상인원
시상종류별 시상인원

(단위 : 명)

종류별	시상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계	252	13	67	172
서울특별시봉사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문화상	14	-	14	-
서울특별시환경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복지상	16	2	5	9

서울특별시 어린이및청소년상	114	4	22	88
서울특별시성평등상	6	1	2	3
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	6	1	2	3
서울특별시건축상	31	1	5	25
서울특별시건설상	16	1	5	10
서울특별시안전상	7	1	2	4

※ 봉사상의 경우 총 시상인원의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대상'선정 가능.

서울특별시 어린이및청소년상	94	3	19	72
서울특별시청년상	20	1	3	16
서울특별시성평등상	6	1	2	3
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	6	1	2	3
서울특별시건축상	31	1	5	25
서울특별시건설상	16	1	5	10
서울특별시안전상	7	1	2	4

※ 봉사상의 경우 총 시상인원의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대상'선정 가능.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시상인원 증가 없이 정원내 조정을 통해 시상종류(서울특별시청년상)를 신설¹⁾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별표1] 시상종류별 시상인원

(단위 : 명)

종류별	시상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계	252	13	67	172
서울특별시봉사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문화상	14	-	14	-
서울특별시환경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복지상	16	2	5	9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	114 (->94)	4 (->3)	22 (->19)	88 (->72)
서울특별시성평등상	6	1	2	3
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	6	1	2	3
서울특별시건축상	31	1	5	25
서울특별시건설상	16	1	5	10
서울특별시안전상	7	1	2	4
+				
서울특별시청년상	20	1	3	16